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회사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2/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⑩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⑪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⑫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 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⑭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 ⑮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 제4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IR실장으로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3/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지침 등의 승인
-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공시담당부서**

- ①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관련 공시담당부서는 IR실로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공정거래법 관련 공시사항은 기업집단 및 공시업무지침을 준용한다
  -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3.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                  |        |              |           |
|-----------------------|------------------|--------|--------------|-----------|
| <b>업무지침</b><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4/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 ③ 각 사업부서의 장과 부서원은 공시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공시관련 법규 교육이나 설명회 개최시 참가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 제1절 정기공시

#### 제7조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공시 사항은 별표1의 정기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8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분기 정기보고서 작성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5/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공시위원회

효과적인 공시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공시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 IR실장
  - 위 원 : 재무, 경영전략, 법무, ESG, 인재경영 등 공시내용 작성 주관부서장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직책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분/반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Form 20-F 등 정기 공시사항 검토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정기공시 제출 전 중요한 사항에 대한 누락, 허위기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없음을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 제11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                       |                  |        |              |           |
|-----------------------|------------------|--------|--------------|-----------|
| <b>업무지침</b><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6/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제13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①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4조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공시 사항은 별표2의 수시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b>업무지침</b><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7/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제17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19조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공시 사항은 별표3의 공정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0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회사의 임원 및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 직원)은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누설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유의사항

-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5조 내지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                       |                  |        |              |           |
|-----------------------|------------------|--------|--------------|-----------|
| <b>업무지침</b><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8/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제4절 조회공시

제23조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공시 사항은 별표4의 조회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4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제13조,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6조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자율공시 사항은 별표5의 자율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7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9/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준용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9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사항은 별표6의 발행 및 주요사항보고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0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등(상법제360조의2,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0/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의 사실이 발생한 때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양수·양도를 결의할 때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양수를 결의할 때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양수·양도를 결의할 때
-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할 것을 결의할 때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초과소유, 해외 증권시장에 대한 주권 상장,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사실이 발생한 때

제31조 준용

-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                       |                  |        |              |            |
|-----------------------|------------------|--------|--------------|------------|
| <b>업무지침</b><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1/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32조 정보의 수집·유지·관리

- ①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 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 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 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34조 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②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 ③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④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 ⑤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 ⑥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2/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⑦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개정 2009.6.10)
- ⑧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⑨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⑩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제35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을 목록화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모니터링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37조 일상적 모니터링

- ①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3/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 제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제38조 주체 및 시기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39조 절차

- 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각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위원회, 내부감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0조 방법 및 고려사항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당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3.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4.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5. 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6. 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
-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                       |                  |        |              |            |
|-----------------------|------------------|--------|--------------|------------|
| <b>업무지침</b><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4/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 평가결과의 활용**

- ① 제38조에 따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42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보고 등**

- ①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임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즉시 공시책임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5/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괴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

-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6/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 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

###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 제47조 보도자료의 배포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담당부서장의 검토 후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 제48조 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9조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7/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제50조 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 대표이사
  - 2. 공시책임자
  - 3. 홍보담당임원
  - 4. 재무담당임원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 등

제51조 시장풍문

-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 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8/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제53조 기업설명회

- ①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49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9장 보 칙

제55조 교육

-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필요시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자회사 및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 ①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        |              |            |
|----------------|-----------|--------|--------------|------------|
| 업무지침<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19/31 |
|                | 공시정보 관리지침 |        |              | Rev.: 11   |

제56조 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공시책임자가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공시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 당사의 기업공시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1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           |        |              |            |
|----------------|-----------|--------|--------------|------------|
| 업무지침<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20/31 |
|                | 공시정보 관리지침 |        |              | Rev.: 11   |

이 지침은 2024년 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정기공시 사항

- ① 사업보고서 :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의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 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 9월의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 에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④ Form 20-F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NYSE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2) 수시공시 사항

①공시사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종속회사 |    | 지주회사 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1.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b><br>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그 결정을 포함)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 처분이 있을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 활동의 정지를 포함) | ○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b>2.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b><br>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 ○    | ○   |    |      |    | 해당부서               |
| <b>3.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해지</b><br>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및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 ○    | ○   |    |      |    | 해당부서               |
| <b>4. 제품 수거·파기 등</b><br>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 ○    | ○   |    |      |    | 해당부서               |
| <b>5. 생산활동 중단·재개</b><br>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 ○    | ○   |    |      |    | 해당부서               |
| <b>6. 증자 또는 감자</b><br>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br>IR실 |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중속회사 |    | 지주회사<br>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7. 주식의 이익소각</b><br>주식의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    | ○   |    |      |    | 해당부서<br>IR실  |
| <b>8. 자기주식 취득·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해지)</b><br>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포함,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    | ○   |    |      |    | 해당부서<br>IR실  |
| <b>9. 주식분할 또는 병합</b><br>상법 제329조의2 및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    |     |    |      |    | IR실          |
| <b>10. 무액면주식↔액면주식 전환</b><br>상법 제329조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의 전환 결정이 있을 때                                                                                                                                                                                                                                                                                                                                    | ○    |     |    |      |    | IR실          |
| <b>11. 주식관련 사채 등의 발행</b><br>주식관련사채법(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항에 따른 사채)등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br>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에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에 관한 결정<br>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br>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차지급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 ○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12. 해외증권시장 상장 관련 사항</b><br>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br>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을 때 및 해당 주권 등을 상장한 때<br>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하거나 보고서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제출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 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br>다. 해외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및 상장 폐지된 때<br>라.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 ○    | ○   |    | ○    |    | 해당부서<br>IR실  |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중속회사 |    | 지주회사<br>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13. 주권의 자진 상장폐지</b><br>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때                                                                                                                                                                                                                                                                                                                               | ○    | ○   |    |      |    | 해당부서<br>IR실  |
| <b>14. 발행 어음의 위변·조 사실 확인</b><br>발행한 어음이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15. 신규 시설투자</b><br>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세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    | ○   |    |      |    | 해당부서         |
| <b>16.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b><br>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을 포함)이 있을 때                                                                                                                                                                                                                                        | ○    | ○   |    | ○    | ○  | 해당부서         |
| <b>17.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등</b><br>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을 포함)이 있거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br>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법물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신고<br>나. 금융기관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 | ○    | ○   |    | ○    | ○  | 해당부서         |
| <b>18. 출자비상장법인의 부도·법정관리·해산</b><br>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 포함)이 부도, 회생절차, 파산, 해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지주회사 및 지배회사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 ○    | ○   |    |      |    | 해당부서         |
| <b>19. 단기차입금의 증가</b><br>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 ○    | ○   |    |      |    | 재무실          |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중속회사 |    | 지주회사<br>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20. 채무인수 또는 면제</b><br>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21.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b><br>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무보증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 또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22. 피보증법인 부도·회생절차·해산</b><br>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공시규정 제7조 1항 2호 다목(3))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부도, 회생절차, 파산, 해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 ○    | ○   |    |      |    | 해당부서<br>사업회사<br>담당부서 |
| <b>23. 사채 원리금 미지급</b><br>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함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24.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연체정보</b><br>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함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25. 선급금, 금전/증권대여, 가지급</b><br>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결정이 있는 때. 이 경우 종업원(최대주주등 이외의 자인 경우에 한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 제외함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26. 재해발생</b><br>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가 발생한 때. 지주회사 및 지배회사도 별도 재무제표 적용                                                                                                                                         | ○    | ○   |    |      |    | 해당부서<br>IR실          |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중속회사 |    | 지주회사<br>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27. 벌금 등 부과</b><br>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b>28. 임·직원의 등의 횡령, 배임</b><br>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인 경우로 한함<br>*임원의 경우 횡령, 배임의 비율·금액기준에 상관없이 공시의무 부과                                                                                                                             | ○    | ○   |    |      |    | 해당부서<br>경영지원본부<br>법무실<br>정도경영실 |
| <b>29. 파생상품 거래 손실</b><br>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이 발생한 때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30. 대규모 가장납입</b><br>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의 가장납입 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 ○    | ○   |    |      |    | 경영지원본부<br>정도경영실<br>재무실         |
| <b>31. 매출채권이외에서 발생한 손상차손</b><br>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 현재의 손상차손 대상 채권별 잔액과 함께 신고하여야 함. 지주회사 및 지배회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32. 감사보고서 제출</b><br>외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이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br>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br>지주회사 및 지배회사는 별도재무제표를 포함<br>나.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 이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여야 함<br>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별도재무제표를 포함 | ○    | ○   |    |      |    | 재무실<br>정도경영실                   |
| <b>33.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b><br>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지주회사 및 지배회사는 별도재무제표 포함                                                                                                                                                                                                               | ○    | ○   |    |      |    | 재무실<br>정도경영실                   |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중속회사 |    | 지주회사 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34. 매출액 및 손익구조 변경</b><br>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1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거나(외감법 제6조 및 동시행령 제8조 1호에 의거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내부결산을 확정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지배회사는 별도 재무제표 포함. 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회사가 작성한 수정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 서식 작성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항목 중 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신고하는 경우 다른 항목 및 자산, 부채, 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 | ○    | ○   |    |      |    | 재무실<br>IR실  |
| <b>35. 주식배당 결정</b><br>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그 예정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    | ○   |    |      |    | IR실         |
| <b>36.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에 관한 결정</b><br>현금·현물배당(법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 및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동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때.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    | ○   |    |      |    | IR실         |
| <b>37.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b><br>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br>가. 해당법인이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 포함)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와 그 결과가 확인된 때<br>나. 해당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 포함)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가”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br>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38. 최대주주 변경</b><br>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 ○    |     |    |      |    | IR실         |
| <b>39. 자회사 편입·탈퇴</b><br>지주회사인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중속회사 |    | 지주회사<br>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40.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b><br>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또는 제3관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결정이 있을 때                                                                                                                                                     | ○    | ○   |    | ○    |    | 해당부서               |
| <b>41.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b><br>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및 제530조의12(물적 분할)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    | ○   |    | ○    | ○  | 해당부서               |
| <b>42.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 합병</b><br>상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또는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    | ○   |    |      |    | 해당부서               |
| <b>43. 부도발생, 은행거래 정지</b><br>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b>44. 회생절차 및 파산</b><br>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br>나. 파산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때 | ○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b>45. 해산</b><br>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상법 제227조 제4호(합병), 제517조제1호의2(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사유는 제외                                                                                                                        | ○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b>46. 금융채권자의 경영(공동) 관리</b><br>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가 상장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장법인이 금융채권자 등의 법인경영(공동)관리를 개시신청 또는 신청취하 하는 경우                                                                                          |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br>재무실 |
| <b>47.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b><br>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 ○    | ○   |    |      |    | 해당부서<br>재무실        |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중속회사 |    | 지주회사<br>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48. 발행한 상장·상장대상 증권의 효력 및 위·변조 관련 소송</b><br>해당 유가증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라”항목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결정, 소취하(상소 취하를 포함), 화해, 청구포기(상소권 포기를 포함)의 허가 신청, 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br>-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br>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 ○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b>49. 일정 청구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b><br>해당 유가증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라”항목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결정, 소취하(상소 취하를 포함), 화해, 청구포기(상소권 포기를 포함)의 허가 신청, 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br>-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인 소송 등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b>50.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b><br>해당 유가증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라”항목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결정, 소취하(상소 취하를 포함), 화해, 청구포기(상소권 포기를 포함)의 허가 신청, 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br>-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소송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b>5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b><br>해당 유가증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라”항목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결정, 소취하(상소 취하를 포함), 화해, 청구포기(상소권 포기를 포함)의 허가 신청, 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br>-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 ○    | ○   |    |      |    | 해당부서<br>법무실  |

| 내 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 중속회사 |    | 지주회사<br>담당부서 |
|-----------------------------------------------------------------------------------------------------------------------------------------------------------------------------------------------------------------------------|------|-----|----|------|----|--------------|
|                                                                                                                                                                                                                             |      | 주요  | 일반 | 주요   | 일반 |              |
| <b>52. 주주총회소집 및 주주총회결의</b><br>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을 때, 이 경우 사업 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                                               | ○    |     |    |      |    | IR실          |
| <b>53. 포괄적 수시공시</b><br>수시공시의무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자율공시사항은 제외함<br>* 자산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체결(중속회사의 기타경영사항)으로 공시 | ○    | ○   |    | ○    | ○  | 해당부서         |

(별표3) 공정공시 사항

| 내 용                                                                                                                                                                | 담당부서 |
|--------------------------------------------------------------------------------------------------------------------------------------------------------------------|------|
| <b>1. 3년 이내 장래 사업 계획 또는 경영계획</b><br>- 신규 사업의 추진<br>- 신시장의 개척<br>- 주력업종의 변경<br>- 회사조직의 변경<br>- 신제품의 생산<br>-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br>- 신기술의 개발<br>- 기존사업의 변경 (중단/폐업/매각 등) | 해당부서 |
| <b>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b>                                                                                                          | 재무실  |
| <b>3.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 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b>                                                        | 재무실  |
| <b>4. 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으로 신고 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b>                                                                                                                        | 재무실  |

|                              |                  |        |              |            |
|------------------------------|------------------|--------|--------------|------------|
| <b>업무지침</b><br><b>포스코홀딩스</b>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30/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별표4) 조회공시 사항

| 내 용                                         | 담당부서         |
|---------------------------------------------|--------------|
| 1. 품문 및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 해당부서,<br>홍보실 |
| 2. 중요한 정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 | 해당부서, IR실    |

(별표5) 자율공시 사항

| 내 용                                                                                               | 담당부서              |
|---------------------------------------------------------------------------------------------------|-------------------|
| 1.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 해당부서              |
| 2. 단기차입금 감소                                                                                       | 재무실               |
| 3.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 해당부서, 재무실         |
| 4. 채무면제 이익발생                                                                                      | 해당부서, 재무실         |
| 5. 녹색경영정보 관련사항                                                                                    | 해당부서              |
| 6. 증여, 수증                                                                                         | 해당부서              |
| 7.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                                                                            | 해당부서, 재무실         |
| 8.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에 대한 판결, 결정사실 | 해당부서,<br>법무실, 재무실 |
| 9. 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실시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 있을 때 및 재산재평가 결과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 해당부서, 재무실         |
| 1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를 확정할 때                                                           | 재무실               |
| 11.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 해당부서, 재무실         |
| 12. 가족친화경영정보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본부            |
| 13. 생산 활동이 중단, 폐업된 후 사유가 해소되어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 해당부서              |
| 14.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                                                           | 그룹DX전략실           |
| 15. 주요경영사항 중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사항 등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해당부서              |

|                       |                  |        |              |            |
|-----------------------|------------------|--------|--------------|------------|
| <b>업무지침</b><br>포스코홀딩스 | 경영>경영지원          | M10094 | 시행일:'26.5.15 | Page:31/31 |
|                       | <b>공시정보 관리지침</b> |        |              | Rev.: 11   |

(별표6) 발행 및 주요사항보고서

| 내 용                                                                                                                                                                                                                                                                                                                                     | 담당부서        |
|-----------------------------------------------------------------------------------------------------------------------------------------------------------------------------------------------------------------------------------------------------------------------------------------------------------------------------------------|-------------|
| 1. 증권신고서                                                                                                                                                                                                                                                                                                                                | 재무실         |
| 2. 투자설명서                                                                                                                                                                                                                                                                                                                                | 재무실         |
| 3. 발행실적 보고서                                                                                                                                                                                                                                                                                                                             | 재무실         |
| 4. 주요사항보고서 (자본시장법 제1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발생 및 당좌거래 정지, 영업활동의 정지, 회생절차 개신 신청, 해산사유 발생</li> <li>- 자본/부채의 변동결정(증자, 감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li> <l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분할(합병)</li> <li>- 영업·자산의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신탁계약 체결·해지)</li> <li>-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중대한 소송, 해외증시 상장·폐지, 주식관련 채권 발행,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등)</li> </ul> | 해당부서<br>IR실 |
| 5. 주요사항보고 또는 거래소신고의무사항                                                                                                                                                                                                                                                                                                                  | 해당부서        |
| 6.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 IR실         |
| 7.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보고                                                                                                                                                                                                                                                                                                              | IR실, 경영지원본부 |
| 8. 공개매수신고서                                                                                                                                                                                                                                                                                                                              | 해당부서, 재무실   |
| 9.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 IR실         |